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시 국무위원 이석 근거 마련〉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50호)

2024. 8.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호중 · 홍기원 · 한병도 · 김한규 · 정성호 · 이병진
용혜인 · 박희승 · 강득구 · 문진석 · 한민수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 의안번호 : 11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법」 제121조¹⁾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등”이라 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석(離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허가)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석(離席)

- 1)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에 따라 이석을 요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재난대응 담당 정부위원은 기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²⁾하거나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를 발령³⁾하였다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국민들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영향이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함.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중이더라도, 위와 같은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등의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사유로 ①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 발령, ② 재난사태 선포의 2가지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2가지 경우에만 국무위원등의 이석 요청 및 허가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즉, 개정안의 이석 사유가 명문화되면 그 외의 사유로는 국무위원등의 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등의 이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다른 이석 사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국무위원등의 이석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유(외국인사 면담, 정부행사 참석 등)에 대하여 국무위원등의 이석이 허용되고 있음.⁴⁾ 이 경우 통상 현행 「국회법」 제121

4) ◦ 본회의

-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09. 4. 6.)에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이석(중국 정치국 리장춘 상무위원 면담)을 승인함.

- 제364회 제7차 본회의(2018. 10. 1.)에서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날 행사를 이유로 이석함.

◦ 위원회

조제4항에 따른 대리출석·답변 승인 절차를 참고하여 본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음.

실제 국무위원등의 이석 허용 사례를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위기 정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국무위원등의 이석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무위원등의 이석 요청 및 허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셋째, 출석 요구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불출석을 전제로 국무위원·정부위원의 대리출석·답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제121조제4항⁵⁾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불출석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무위원등의 불출석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처럼 이석 사유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면 대상이 동일하고 효과가 유사한 두 조문 간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문 간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
- 제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 3. 23.)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 양해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석(정부 행사 참석)을 허가함.
 - 제406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3. 5. 24.)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함.
 - 제40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 8. 22.)에서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 보고 일정을 이유로 이석함.
 - 제41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9. 1.)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제2차관의 이석(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참석)을 승인함.

5)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있음.6)

문 의 처

02)6788-5017

-
- 6)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등의 불출석은 폭넓게 허용하면서 이석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될 수 있는데, 국무위원등에 대한 출석 요구 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등의 이석보다 불출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